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개정 2025. 1. 3.>

정근수당 지급 구분표(제7조제1항 관련)

1. 정근수당

근무연수	지급액	근무연수	지급액
2년 미만	월봉급액의 10% 해당 금액	8년 미만	월봉급액의 35% 해당 금액
5년 미만	월봉급액의 20% 해당 금액	9년 미만	월봉급액의 40% 해당 금액
6년 미만	월봉급액의 25% 해당 금액	10년 미만	월봉급액의 45% 해당 금액
7년 미만	월봉급액의 30% 해당 금액	10년 이상	월봉급액의 50% 해당 금액

2. 정근수당 가산금

근무연수	월지급액		비고
	전 공무원(군인 제외)	군인(하사 이상)	
20년 이상	100,000원	100,000원	(추가 가산금) •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게서는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인 사람에게서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5년 이상 20년 미만	80,000원	8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60,000원	60,000원	
7년 이상 10년 미만	50,000원	50,000원	
5년 이상 7년 미만		40,000원	
5년 미만	30,000원	30,000원	

비고

가. 제1호에서 “월봉급액”이란 해당 공무원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나. 차관급 이상의 월봉급액을 받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